

全國自治福券發行 行政協議會 規約(案)

第1條(目的) 이規約은 地方自治法 第142條 및 地方自治福券發行承認基準등에 關한 規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全國自治福券發行을 위한 行政協議會의 構成과 그 組織 및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協議會의 名稱) 協議會는 全國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라고 한다.

第3條(事務所의 位置) 協議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234의2番地 所在 社團法人 韓國地方財政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에 둔다.

第4條(構成) 協議會는 地方自治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로 構成한다.

第5條(組織) ①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으로 하고, 任員으로 會長 1人, 副會長 1人 및 監事 1人을 두되, 會長 및 副會長은 各各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監事는 會長과 副會長이 所屬되지 아니한 地方自治團體 公務員中에서 會長이 指名한다.

②會長, 副會長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任期中에 任員資格을喪失하였을때는 所屬 地方自治團體의 後任者가 前任者の 殘任期間을 承繼한다.

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④會長이 有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監事는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處理 및 第7條의 规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共濟會에 委託한 事務의 處理狀況을 監查한다.

⑥協議會와 實務協議會의 會計 및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과 職員을 둔다.

第6條(實務協議會) ①協議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查擔當官으로 實務協議會를 構成 運營한다.

②實務協議會의 委員長(이하 “實務委員長”이라 한다)은 會長이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查擔當官으로 한다.

③實務協議會는 協議會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 檢討와 第7條의 规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한다.

第7條(機能) ①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1. 福券發行關聯事務의 代行機關選定 및 委託契約締結에 關한 事項
2. 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의 管理 및 地方自治團體間 配分등에 關한 事項
3. 福券의 販賣 및 弘報에 關한 事項
4. 其他 全國自治福券 發行 및 事務管理등에 必要한 事項

②協議會는 效率的인 事務處理를 위하여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實務協議會에 委任하거나, 第2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共濟會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第8條(會議) ①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定期會議는 每年 上半期와 下半期에 各各 1回 召集하고, 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委員 3分의 1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③實務協議會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實務委員 3分의 1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④內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의 開催를 勸告할 수 있다.

⑤會長은 協議會開催後 14日 以內에 開催結果를 内務部長官에게, 實務委員長은 協議會의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檢討意見과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에 對한 處理結果를 協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協議方法等) ①協議會에 上程된案件에 對한 合議는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 構成委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監事는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議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

第10條(未合議事項 調整等) ①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하여도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協議會의 調整要求가 있을 경우에는 内務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協議會를 構成한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内務部長官이 調整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第11條(收益金의 管理運營 및 配分) ①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의 管理運營과 地方自治團體別 配分은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收益金을 配分하고자 할 境遇에는 福券販賣額, 市郡區數, 人口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行事紀念福券을 當該行事와 關聯된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發行하는 境遇의 販賣收益金의 配分은 發行關聯 地方自治團體間의 合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第12條(事務處理等) ①協議會 및 實務協議會는 會議錄을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②協議會 및 實務協議會는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關係公務員의 參席 및 意見開陳을 要請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은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3條(財務會計等) ①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運營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經費는 協議會를 構成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가 共同으로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

②會長은 會計事務處理와 全國自治福券發行 事務處理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別途로 公務員을 任命하거나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

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事務處理狀況은 每年 첫번째 會議時 幹事가 報告하여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4條(規約 改正) 이 規約의 改正是 協議會 委員 過半數의 發議와 委員의 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 한다.

第15條(補則) 이 規約에 規定된 事項以外에 協議會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이 規約은 告示한 날로부터 效力を 發生한다.

1988. 4. 6

● 地方自治法 [法律第4789號全文改正]

- 第142條(行政協議會의 구성) ① 地方自治團體는 2個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
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地方自治團體간의 行政
協議會(이하 "協議會"라한다)를 구성할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内務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
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
團體간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관계 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
에 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